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총 무 과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미래성장 선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 단위 기구 신설 및 조직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한 기능 재배치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국(局) 신설을 통한 국장 통솔기능 및 책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 증 1

1) 신 설 : 미래교육돌봄국, 첨단산업국

2) 직제변경 : 평생학습원(4급→5급)

3) 명칭변경

- 미래도시기획실→기획조정실, 경제산업국→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본부

나. 과 단위 : 증감없음

1) 신 설 : 투자유치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 아시아육상추진단(한시기구),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농촌활력과

2) 통 합 : 산단혁신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시설관리과, 노인장애인과, 도시재생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노인종합복지관

3) 명칭변경

- 기업투자과→기업지원과, 낭만축제과→낭만관광과, 식품위생과→위생과, 아동친화과→아이돌봄과, 가족보육과→가족정책과, 건축과→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주택과, 유통특작과→농식품산업과, 보건행정과→보건의료정책과

다. 기존 한시기구(미래도시기획실) 존속기한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조례 제 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미래도시기획실, 경제산업국”을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경제국, 첨단산업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미래도시기획실에 두는 과)”를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에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를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로, “교육청소년”을 “세정과,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8호로 한다.

7.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를 “(미래교육돌봄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교육돌봄국에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및 가족정책과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미래교육돌봄국장”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아동친화 및 아동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업지원 및 기업육성, 관리”를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교류 및 협력”을 “청소년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가족지원 및 출산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산업정책 및 종합전략”을 “여성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를 “(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국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및 종합허가과를 둔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축제·관광정책 수립, 추진”을 “국제교류 및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광기반시설”을 “산업·농공단지”로, “관리”를 “분양,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및 기업육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10.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를 “(첨단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첨단산업국에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및 전략산업과를 둔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인, 복무, 의전”을 “신산업정책 및 종합전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를 “반도체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를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직 총괄운영”을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5. 로봇산업 및 4차산업에 관한 사항

제12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1절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6장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및 아시아육상추진단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항
4. 축제·관광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6.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조성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

6. 공무직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을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각

각 제6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노인,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족지원 및 아동보육”을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6호) 중 “여성정책”을 “노인복지”로 한다.

4.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및 공공시설과”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및 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5호) 중 “도시경관”을 “도시재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1.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23조(종전의 제21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미시평생학습원”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를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2. 구미시평생학습원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강사관리 및 평가・연수

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출장소

제26조(종전의 제24조)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

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하부행정기관(읍면동)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시아육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낭만축제과장”을 “낭만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낭만축제과장”을 “낭만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업투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④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 경제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5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

⑥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도시기획실장, 경제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미래교육돌봄국장”으로 한다.

⑯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신산업정책과”를 “전략산업과”로, “기업투자과”를 “기업지원과”로, “농업정책과”를 “농촌활력과”로 한다.

별표 4 중 “신산업정책과”를 “전략산업과”로 한다.

별표 5 중 “신산업정책과”를 “전략산업과”로 한다.

⑰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유통특작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한다.

⑱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중 “유통과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⑲ 구미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산물도매시장소장,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⑳ 구미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㉑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㉒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촌활력과장,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㉓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㉔ 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㉕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유통특작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㉖ 구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노인장애인과장, 아동친화과장”을 “아이돌봄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 구미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구미보건소	구미시 선산대로 111(지산동)	구미시일원 (제외 읍·면지역)
건강생활 지원센터	구미건강생활 지원센터	구미시 박정희로 45-7(상모동)	상모사곡·임오동 일원
보건 지소	인동보건지소	구미시 이계북로 149(진평동)	인동·진미·양포동일원

< 선산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시 읍·면지역 일원
보건 지소	고아읍보건지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80	고아읍 일원
	산동읍보건지소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999-6	산동읍 일원
	무을면보건지소	구미시 무을면 문화마을길 32	무을면 일원
	옥성면보건지소	구미시 옥성면 주아령로 411	옥성면 일원
	도개면보건지소	구미시 도개면 궁기4길 15	도개면 일원
	해평면보건지소	구미시 해평면 숭선로 523-14	해평면 일원
	장천면보건지소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4	장천면 일원
보건 진료소	서부보건진료소	구미시 선산읍 배다리길 90	습례1·2리, 봉남1·2리 소재리
	대방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포아로 636-5	신촌리, 횡산리, 외예리, 내예리
	구운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송평로 141	괴평1·2리, 송림리 다식리
	임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55	봉산1·2리, 임천리
	송백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860	백현1·2리, 송산리
	연악보건진료소	구미시 무을면 상송길 11-18	오가1·2·3리, 상송리 안곡1·2리
	덕촌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582	산촌리, 태봉1·2리 대원1·2리, 덕촌1·2리
	구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5	구봉1·2리, 옥관1·2리
	가산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용산가산길 157-1	가산1·2리, 동산리 용산1·2리
	다곡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471	다곡1·2리, 신림리 도개1·2리
	낙산보건진료소	구미시 해평면 낙산2길 21-4	낙산1·2·3리, 일선리
	금산보건진료소	구미시 장천면 장천금산3길 10-3	금산리, 오로1·2리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1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구미시평생학습원	구미시 산호대로 243(공단동)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 경은로 85(형곡동)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구미시 금오산상가길 12 (남통동)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62
구미시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여의도동)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시 박정희로 123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관련)

출장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구미시선산출장소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단, 농정, 식품, 유통, 축산, 산림 업무는 관할구역을 시전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도시기획실,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	제3조(실·국의 설치) ----------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경제국, 첨단산업국----------.
제5조(미래도시기획실에 두는 과) ① 미래도시기획실에 정책기획과,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교육청소년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세정과, 징수----------.
② 미래도시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5. ~ 7. (생 략)	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8.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9. 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기업투자과, 노동복지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단혁신과 및 종합허가과를 둔다.	제6조(미래교육돌봄국에 두는 과) ① 미래교육돌봄국에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및 가족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미래교육돌봄국장----------.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업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 및 아동보육----------
3. 기업지원 및 기업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력 및 교육지원----------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지원----------
5.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가족지원 및 출산정책----------
6. 신산업정책 및 종합전략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
7.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삭 제>
8.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9.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산단혁신 및 인프라구축에	<삭 제>

관한 사항	
11.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낭만축제과, 관광인프라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식품위생과를 둔다.	제7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및 종합허가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국장----------.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및 기업육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항	3.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4. 축제·관광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협력----------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5. 산업·농공단지 --- 분양, 관리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조성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지원----------
8.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	8.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복합허가민원 종합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제8조(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첨단산업국에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및 전략산업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첨단산업국장----------.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1. 신산업정책 및 종합전략---
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 연구, 육성지원
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
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
5. 공무원 교육훈련	5. 로봇산업 및 4차산업에 관한 사항
6. 공무직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지방세 세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4.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및 아시아육상추진단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수립, 추진 및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조성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사항 4. 축제·관광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6.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행정, 지역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 선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 6. 공무직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조직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업무의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출,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및 생활안정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노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 및 아동권익에 관한 사항 <신 설> 5. 가족지원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 ② ----------. 1.·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 <삭 제> 4.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6. 장애인복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및 공공시설과를 둔다.	제12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및 토지정보과----------.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농공단지 조성 관련 사항	<삭 제>
4.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삭 제>
5. 도시경관 및 거리미관 사업 추진	9. 도시재생 ----------
6. ~ 11. (생 략)	3. ~ 8. (현행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생 략)	10.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 설>	11.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13. (생 략)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3장 직속기관	<삭 제>
제1절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삭 제>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신 설>	제1절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절 농업기술센터
<신 설>	
제15조 ~ 제18조 (생 략)	제17조 ~ 제20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신 설>	
제19조·제20조 (생 략)	제21조·제22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제21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소관사무) ----------.
1. 구미시평생학습원	3.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삭 제>
나. 강사관리 및 평가·연수	<삭 제>
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마. ~ 사. (생 략)	가. ~ 다. (현행 마목부터 사

	목까지와 같음)
아. (생 략)	라. (현행 아목과 같음)
<신 설>	2. 구미시평생학습원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강사관리 및 평가·연수
	다. 시민평생학습 종합기획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인문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2.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1.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3.·4. (생 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삭 제>
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농산물 및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경매장내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삭 제>

가.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나.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다. 경로식당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항 라.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마. 노인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및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사. 노인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노인 물리치료 및 양·한방 진료에 관한 사항 자. 노인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9. (생 략)	7.·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5장 출장소	<삭 제> 제5장 출장소
<신 설>	
제22조·제23조 (생 략)	제24조·제25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24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소관사무)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
10.·11. (생 략)	11.·12.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신 설>	13.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 18. (생 략)	14. ~ 20. (현행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제6장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삭 제>
<신 설>	제6장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제25조 ~ 제27조 (생 략)	제27조 ~ 제29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과 장	정 종 혁
안	팀 장	김 혜 진
자	담 당 자	허 수 범 (480-6773)